

도시계획시설 (공공청사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1.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제2017-166호(2017. 12. 7.), 송파구 고시 제2025-26호(2025. 3. 13.)로 결정(변경)된 도시계획시설(공공청사)에 대하여,
2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제43조, 같은법 시행령 제25조,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 제67조 및 「도시·군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4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(공공청사) 결정(변경)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.

2026년 5월 21일

송 파 구 청 장

1. 도시계획시설 (공공청사) 결정(변경) 조서

■ 도시계획시설 (공공청사)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세분	위 치	면 적(㎡)			최 초 결정일	비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변경	-	공공청사	공공청사	문정동 656-1	2,067.7	-	2,067.7	2017. 12. 7. (서울특별시 고시 2017-166호)	공간적범위 결정

■ 도시계획시설 (공공청사)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 표시번호	시설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-	공공청사	• 공공청사 공간적 범위 결정 - 층 수 : 지하1층, 지상1층,3층,4층 일부, 옥탑층 - 연면적 : 2,799.31㎡	• 공공청사 내 업무시설(송파구 시설 관리공단) 필요에 의한 공간적범위 결정

- 도시계획시설 (공공청사) 건축물의 공간적 범위 결정 조서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위 치	구분	면 적(㎡)	최 초 결정일	비고
신설	-	공공청사	문정동 656-1	층수	지하1층, 지상1층, 지상3층, 지상4층 일부, 옥탑층	-	-
				연면적	2,799.31㎡		

※ 비도시계획시설 범위: 지상2층, 지상4층 일부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업무시설(연면적: 1,178.64㎡)

■ 도시계획시설 (공공청사) 건축물의 범위(변경없음)

도면표시 번호	건폐율(%)	용적률(%)	높이(층)	비고
-	60%이하	200%이하	7층이하	제2종일반주거지역(7층이하)

2. 관계도면 : 별첨

※ 게재된 도면은 참고용으로 측량 등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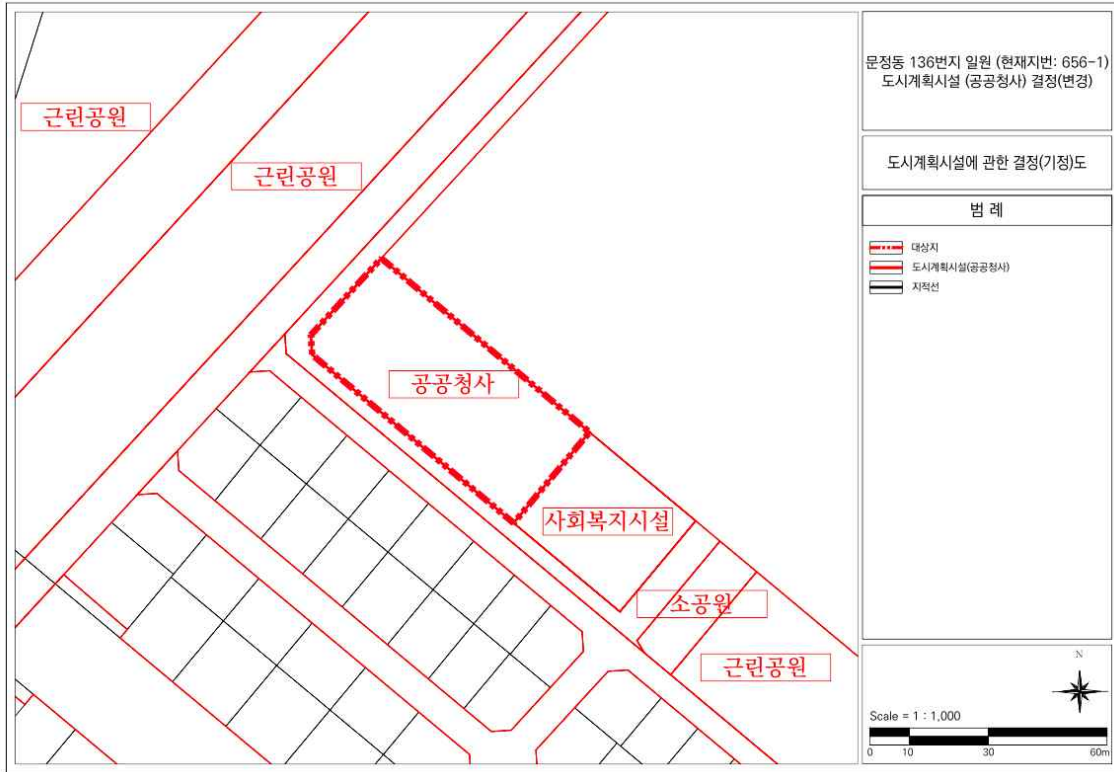
3. 기타사항

○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송파구청 도시계획과 (☎02-2147-2995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고시문, 지형도면 토지이용(<http://www.eum.go.kr>), 서울도시공간포털(<http://urban.seoul.go.kr>) 게시

도시계획시설(공공청사)에 결정(변경)도

■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(기정)도



■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(변경)도

